

대구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단11838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

피고대구광역시 동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

담당변호사 이찬우

변론 종결2020. 11. 11.

판결 선고2020. 11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대구 동구 B 외 4필지에 지하 1층, 지상 3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, 근린생활시설인 'C'(이하 '이 사건 음식점'이라 한다)을 건축한 후 2017. 8. 29. 사용승인을 받았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하수도법 제61조(2020. 5. 26.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하수도법'이라 한다)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(이하 '이 사건 조례'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406,261,03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17. 8. 29. 부과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처분은 부담금 부과 법적근거, 산출근거,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 아니다. 또한 이 사건 음식점의 식당은 부대급식시설에 해당하는데도, 피고는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보아 오수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. 부대급식시설에 해당한다.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,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인자부담금 상당의 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문제이므로,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규정

하수도법

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

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(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)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하수도법 시행령

제2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)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(환경부고시 제2015-133호, 이하 '이 사건 고시'라 한다)

3. 산정방법

가.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 「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」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중 관련 부분

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

제17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

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오수발생량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으로 한다)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나.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

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바,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,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(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).

다. 피고가 부담금 부과에 법적인 근거, 산출근거,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, 그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이 사건 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피고가 이 사건 예식장의 오수발생량 기준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것 또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되지 못한다.

더구나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부대급식시설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업시설, 자동차관련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(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)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고,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(이 사건 고시 각주 5번). 그런데 이 사건 예식장의 폐백실과 식당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인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므로, 원고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영선